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삭제하거나 정비하고, 인증운영위원회에 부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의 목적, 기능 등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증등급 완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이전

3) 행정규제 : 비대상(사전심사 완료, 국무조정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기관”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인증제도”를 각각 “인증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를 “인증기관으로”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인증”으로, “5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각각 “인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인증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
2. 제4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작성 및 관리와 인증에 관한 업무 전반
3. 인증제의 홍보
4. 인증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장비의 기능 유지 관리
5.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업무

무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제4조제6항”으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기관”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제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협의를”을 “협의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를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및”으로, “구분에 따라 해당”을 “서류를”로, “신청서를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를 “예비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60일(「건축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인증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7조제3항 중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대해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난방”을 “난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② 인증의 등급은 플러스 등급부터 1~5등급까지의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또는 별표 1의2”를 “별표 1”로, “있으며,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한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으로, “예비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

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평가 결과”를 “예비인증 평가를 거쳐”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제12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본인증”을 “인증”으로, “해당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인증제”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인증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을 각각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인증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제 운영기관”을 “운영

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설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제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부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운영위원회에 인증평가 기준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제에서 평가하는 요소기술에 관한 사항
2. 인증제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인증의무 완화대상 건축물의 인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제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에 기술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4조의3(인증의무 완화대상 건축물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지하에 건축되는 등 입지조건의 특수성으로 인증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면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 등급취득 의무를 완화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은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완화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한 검토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④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다시 받아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4. 종전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3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제5조제3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이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제5조제3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칙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을 완료하기 전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 지정·고시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증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임기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임기 만료
시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명판(제9조제2항 관련)

1. 인증명판 표준 규격



가. 인증명판 표시사항: 인증명, 인증마크(등급표시), 대상건축물의 명칭, 인증번호, 유효기간

나. 명판 비율: 3 : 4(가로 : 세로)

다. 재질: 동판

라. 글씨체: Asian Expo L, 나눔바른고딕

2. 비고

가. 인증명판의 크기, 재질, 글씨체 및 표시사항의 배치 등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외관, 마감재 등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에 따른 인증명판 표시사항은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마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나. 등급별 인증마크의 규격(비율, 색상 등)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명 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 음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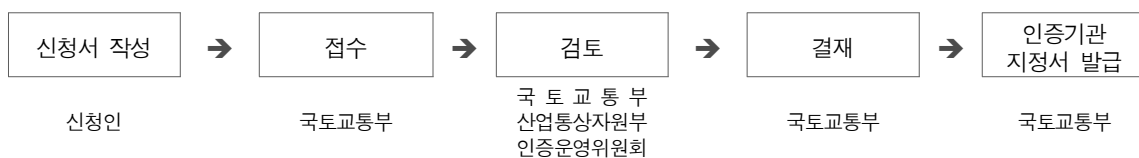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소 재 지:
4. 전 화 번 호:
5. 설 립 근 거:
6. 설 립 목 적:
7. 설 립 연 월 일:
8. 유효기간 :

위 기관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단독 및 공동주택 5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성 명	부 서	직 위	
	책 임 자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공사 시공자	회사명			면허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공사 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신청 건축물	건 축 물 명			착공일	
	허가(신고)번호			준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주거용 건축물 (주용도: , 총전용면적 임대: m ² , 분양: m ²)			
		[] 주거용 외의 건축물 (주용도: , 연면적: m ² , 층수: 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대지 내 (),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			
예비인증 등급 및 발급일		등급(년 월 일)		예비인증 번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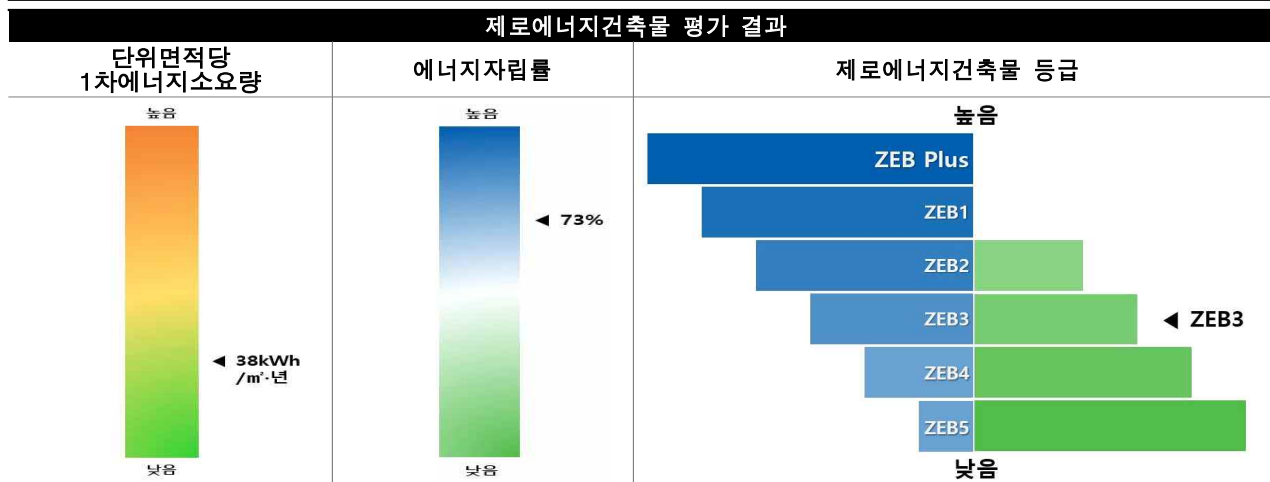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첨부서류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설치도서 10. 1부터 9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 수수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검토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결재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	인증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준공연도	:	평가자	:
주 소	:	인증기관	:
층 수	:	운영기관	:
연 면 적	:	유효기간	: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인증 등급	
설계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공사시공자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순소요량 :	
공사감리자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순생산량 :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	☐ 에너지자립률 합 계 :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대지 내 :	
		대지 외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 해당 인증결과는 국제규격에 따라 건축물의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 성능을 정량 평가 (Asset Rating)한 결과로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sum(\text{에너지소요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sum[(\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단독 및 공동주택 50일 이내 그 밖의 건축물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성명	부서	직 위			
	책임자	전화번호	F A X	전자우편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주소			준공예정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주거용 건축물(주용도: , 총전용면적 임대: m², 분양: m²) [] 주거용 외의 건축물(주용도: , 연면적: m², 층수: 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 [대지 내 (), 대지 외 ()] 건축물 대지 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을 경우 해당 주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3항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도서 8. 1부터 7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 수수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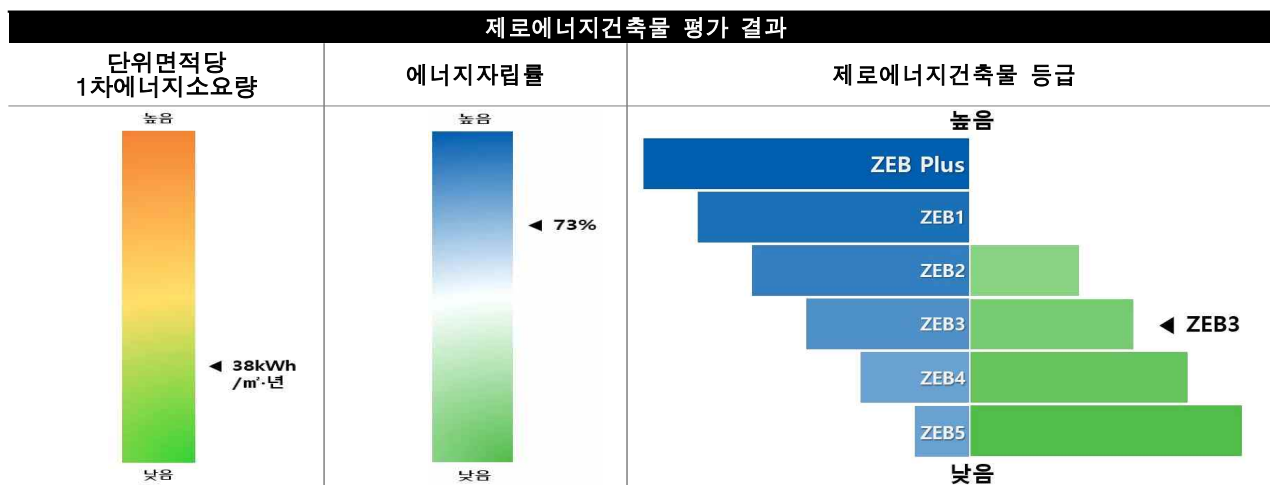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인증번호	:
준공연도	:	평가자	:
주 소	:	인증기관	:
층 수	:	운영기관	:
연 면 적	: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인증 등급	
설계자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	
건축물 대지 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주소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 에너지자립률	합 계 :
			대지 내 :
			대지 외 :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Sigma(\text{에너지소요량}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Sigma\{[\text{대지 내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 (\text{대지 외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imes \text{보정계수})] \times \text{해당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text{평가면적}$
에너지자립률	1차 에너지 소요량 대비 1차 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백분율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결과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u> <u>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u> <u>규칙</u>	<u>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u> <u>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u>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조(목적) ----- ----- ----- ----- 위임된 ----- ----- ----- ----- ----- ----- ----- ----- ----- -----. 제2조(적용대상) ----- ----- ----- ----- -----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 -----

-----.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

1. · 2. (생략) 3. <u>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u> 4. <u>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u> 5. <u>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u> 6. · 7. (생략) 8. <u>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u> 9. 그 밖에 <u>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u>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 ⑤ (생략)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u>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u>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u>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u>----- -- 4. <u>인증제</u>----- ----- ----- 5. <u>인증제</u>----- ----- 6. · 7. (현행과 같음) 8. <u>인증제</u>----- ----- ----- -- 9. ----- <u>인증제</u>----- -----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 ----- <u>인증기관</u>----- ----- -----
---	--

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
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
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
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
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

② 인증기관으로 -----

-----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기관-----

----- 인증-----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
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
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 8명 -----
-----.

1. ~ 8. (현행과 같음)

⑤ -----

-----.

1. 인증 -----

--

2. 인증 -----

3. 인증 -----

4. 인증 -----

5. 인증 -----

6. 인증 -----

7. ----- 인증업무 -----

--

⑥ -----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다.

⑧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전담조직·업무수행체계, 상근 인증업무인력 및 인증업무 처리규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2. 3명 이상의 상근 인증업무인

--- 인증기관 -----

 -----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
 -----.

<삭 제>

<삭 제>

력(인증업무인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3. 인증업무 처리규정(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신 설>

제4조의2(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의 교육 및 관리
2. 제4조제5항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작성 및 관리와 인증에 관한 업무 전반
3. 인증제의 홍보
4. 인증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장비의 기능 유지 관리
5.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요

	<u>청하는 업무</u>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4조제6항</u> <u>및 제7항에 따라</u>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u>별지 제2호서</u> <u>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u> <u>인증기관 지정서를</u>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 <u>제4조제6항</u> ----- ----- ----- <u>별지 제2호서식</u> <u>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u> -----.
② <u>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u>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인 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u>제4조제6항</u>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의 <u>협의를 거쳐 제</u> <u>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u> <u>만료되는 날부터 5년의 범위</u> <u>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u> <u>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u> <u>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u> <u>관과의 협의 후에 제14조에 따</u> <u>른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u>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③ ----- ----- <u>협의 후 인증운</u> <u>영위원회의 심의를</u> ----- ----- ----- <u><후단 삭</u> <u>제></u>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④ ----- ----- -----

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⑤·⑥ (생략)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7조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
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
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
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
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변
경된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인증 신청 등) <삭제>

② -----

-----인증-----

-----.

1. ~ 3.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1. ~ 3. (현행과 같음)

③ -----
-----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및 ----- 서류를 ----- 제출-----.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바.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
서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
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
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
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
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
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
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
본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
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
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
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의 서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

<신 설>

우만 해당한다)

9.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
류 외에 인증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④

예비인증서

.

한다.

1. ~ 3. (생략)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50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일)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30일(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 ⑨ (생략)

제7조(인증 평가 등) ①·② (생략)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

1. ~ 3. (현행과 같음)

⑤ -----
----- 60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일) ----.

<삭 제>

<삭 제>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인증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해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 공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수준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

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신 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등

-----.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인증-----

-----.

1. 난방-----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

3.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여부

② 인증의 등급은 플러스 등급부터 1~5등급까지의 6개 등급

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

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 등급

③ (생략)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6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으로 구분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

별지 제4호서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

-----.

② -----

-- 별표 1 -----

있다.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0년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 받은 날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

----- 운영
기관-----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
인증(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본인증”이라 한다)-----
-----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이하 “예비인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나. 제6조제3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 사본

나. 제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

증”이라 한다)----.

② -----

-----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
-.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제6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

비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의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
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
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
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

<삭 제>

③ ----- 예비인증 평
가를 거쳐 ----- 별지 제6
호서식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
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인증-

-----.

② 운영기관-----

[illegible]

제13조(인증 수수료) ① -----

----- 인증기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운영기관

(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의 유효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
증기관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
지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
----- 인증제 -----

인증운영위원회-----

-----.

② _____
_____.

1. 인증기관-----

2. 인증기관 -----

3. 인증 -----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인증제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

4. -----
-- 인증제-----

③ -----

----- 운영기관-----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부설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제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부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운영위원회에 인증평가 기준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제에서 평가하는 요소기

<신 설>

술에 관한 사항

2. 인증제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
관의 장이 요청하는 인증의무
완화대상 건축물의 인정 여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인증제의 평가기준과 관
련된 중요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기술위원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지정한 제로에너지건
축물 지원센터에 기술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
시한다.

제14조의3(인증의무 완화대상 건
축물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
른 인증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지하에 건축되는 등 입지조건의 특수성으로 인 증취득이 불가한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괄호단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이 면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증 등급취득 의무를 완화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은 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완화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술위원회에서 작성한 검토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은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④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토서를 다시 받아올 것을 요청할 수 있다.